

1. 개정이유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 타인에게 본인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을 대여하는 경우 1차 위반이 적발되는 즉시 자격취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나, 이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은 2차 위반 시 등록취소되어 개인과 업자의 처분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자격대여를 통해 무자격자가 수리하게 될 시 국가유산에 대한 손상과 함께 인적·물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수리업자등의 관련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1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자 하며, 국가유산수리 능력평가 신청 관련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대한 근거 법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 기준에 맞지 않는 표현을 수정하여 법령에서 의미하는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수리업자등 자격 대여 행정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2)

나. 관련 법률명 및 자구 수정(안 제10조의2, 제17조의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6. 00. ~ 2026. 7. 00.)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17조의8제5호 중 “제76조”를 “같은 법 제76조”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국가유산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등록취소			
--	--------------	------	--	--	--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카.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등록취소			
--	--------------	------	--	--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② (생략)	제10조의2(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전년도 실적등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재무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 <u>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u> 」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2. ----- -----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영 제20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7조의8(책임감리 적용기관)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제76조에	5. ----- ----- <u>같은 법</u>

따른 지방공단	<u>제76조</u> -----
---------	-------------------